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17 부산국제신발전시회(BISS 2017)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FIPC)를 말한다.

제2조 전시면적 할당

1. 주관자는 신청 접수순,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할당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전시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신청서는 BISS 사무국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면적은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면적을 할당기준에 의거배정하며, 참가신청 및 참가비납부는 2017년 8월 31일 마감한다.

제4조 참가비

기본 참가비는 독립식부스일 경우 부스당 ₩800,000으로 하고 조립식부스일 경우 부스당 ₩1,100,000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 참가비 내역

참가비에는 전시장소, 24시간 외곽경비, 통로청소, 홍보, 전시회 디렉토리 제공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관측이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측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관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BISS 2017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확보하여야 한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10조 현장판매

전시회의 참가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현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 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 단, 주관자가 별도로 정한 특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위험부보

전시자는 전시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 훼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해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전시회 변경

주관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신발산업진흥센터(FIPC)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의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 부산지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